

■ 재외국민등록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19. 12. 24.> 영사민원24(consul.mofa.go.kr)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재외국민등록신청서

색상이 어두운 칸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시	심사관
성명(한글)	성명(영문)	
홍길동	HONG KIL DONG	
신청인 주민등록번호(국내 주민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 생년월일 및 성별)		
700101-*****		
여권번호	병역관계	※ 해당란에 [√] 표시하세요.
m*****	[√] 병역필 [] 미필 [] 해당 없음	
	※ 가족관계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 작성하세요.	
대한민국 내 등록기준지	서울특별시 종로구 사직로8길 60	
체류국 내 주소	체류국 정부에 등록된 별도의 주소가 있는 경우 이를 함께 기재하세요. 3500 Clay Street, San Francisco, CA 94118	
또는 거소		
체류국 내 연락처	(전화번호)	(E-mail)
	415-921-2251	koreavisa1@mofa.go.kr

체류 정보	최초 입국일	2019. 3. 13
체류목적 (※ 해당내용 ○)	거주, 동거, 유학, 취업, 투자, 주재(상사원/공무원), 기타()	
체류자격 (※ 해당내용 ○)	영주, 가족체재, 유학, 취업, 투자, 상용, 공무, 워킹홀리데이, 기타()	

추가 정보	체류국 내 직업 및 소속 기관	(체류국 내 직업) 사무직 (소속기관) 주샌프란시스코총영사관
※ 해당사항 있는 경우에만 작성	국내 연고자 연락처 (성명) 김길자 (연락처) 010-****-****	※ 다른 사람의 연락처를 기재하십시오. (해외체류 중 사고발생시 지원을 위하여 필요)

위에 기재한 내용은 사실이며, 「재외국민등록법」 제2조,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재외국민등록을 신청합니다.

2020년 7월 1일
신청인 **홍길동 Hong Kildong**

주 **대사관·총영사관(분관·출장소)의 장** 귀하

신청인 제출서류	1. 기본증명서 2. 체류국의 사증(査證), 출입국심사 날인, 출입국 확인서 등 체류국 체류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3. 주민등록증이나 그 밖에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4.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또는 제적등본 (대리신청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1. 여권 2. 병적증명서 또는 병역사항이 포함된 주민등록표 초본 3.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재외국민등록의 신청과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 또는 대리신청인이 해당 서류를 직접 제출해야 합니다)

2020년 7월 1일
신청인 **홍길동 Hong Kildong**

유의사항

1. 재외국민등록은 재외국민등록 담당자에게 직접 방문, 우편, 모사전송, 영사민원24(consul.mofa.go.kr)를 통하여 제출하는 방법으로 할 수 있습니다.
2. 등록대상자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직계혈족, 직계혈족의 배우자는 등록대상자의 위임을 받아 신청을 대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대리인은 대리인 및 등록대상자의 주민등록증이나 그 밖에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 및 대리관계를 소명할 수 있는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또는 제적등본을 제시해야 합니다.
3. 대리신청을 위하여 등록대상자 본인은 아래 '위임장' 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 출입국 사실 등(여권, 주민등록표 초본,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병적증명서)에 대한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는 직접 또는 대리인을 통하여 동의 여부를 표시하여 제출할 수 있습니다.
4. 미성년자의 등록신청은 대리관계를 증명하는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첨부하여 법정대리인이 대리하거나, 미성년자가 법정대리인 동의서를 첨부하여 직접 할 수 있습니다.
5. 체류국 최초 입국일은 체류국 입국 후 90일을 초과하여 다른 국가에서 체류한 경우에는 재입국일을 의미합니다.
6. 등록사항이 변경되면 등록공관 담당자에게, 주소나 거소가 변경되어 등록공관이 변경되면 새로 등록할 공관의 담당자에게 이를 신고하여야 합니다.
7. 재외국민의 등록을 한 자가 90일을 초과하는 기간 동안 계속하여 국내에 거주 또는 체류할 의사를 가지고 귀국한 경우에는 귀국일부터 90일 이내에 귀국신고를 하여야 하며, 외교부 담당자에게 직접 방문 또는 영사민원24(consul.mofa.go.kr)를 통하여 제출할 수 있습니다.

위임장

본인은 「재외국민등록법 시행령」 제2조제2항에 따라 본인의 재외국민등록의 신청을 위한 권한을 아래 사람에게 위임합니다.

년 월 일

위임한 사람(신청인)

위임받은 사람(대리인)

성명

생년월일

신청인과의 관계

작게 할수록 가능

위임한 경우만 서명해주세요